2026. 11. 9.

수 신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박미정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대표 발의자 박미정 의원 (인)

(발의자 : 7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붙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박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

발의연월일 : 2026. 11. 9.
발 의 자 : 박미정·김해바른·김형우·
박성준·하서영·정지광·
김안숙 의원(7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의정활동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활성화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다. 홍보매체의 콘텐츠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 및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한 공모전·이벤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
-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활동 정보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정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홍보간행물・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포함한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공모전・이벤트”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라 한다)은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 등에 대한 구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2. 소셜미디어 운영
3.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

항

2. 문화, 안전,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매체의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인쇄·배부·공모·참여행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료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

한 콘텐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 또는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모전・이벤트 등의 내용)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전・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의정 홍보의 효율성과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전·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

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 4. (생 략)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 8. (생 략)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 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박미정의원 대표발의) 서명부

발의자		찬성자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박미정	박미정		
김해바른			
김형우	김형우		
강성훈	강성훈		
하서영			
정지연	정지연		
김안숙	김안숙		